

강사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3.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기본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상시 근무를 하지 아니하되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른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강사는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만 70세 미만인 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강사」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기술 중 해당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강사 자격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4조(임용일)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에게 휴직·과연·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직위해제·퇴직·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강의시간 및 복무) ① 강사의 강의시간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강사의 강의시간은 학기당 매주 6시간 이내(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기당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③ 강사는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과목의 강의, 학사관리(강의계획서 입력, 시험 및 성적평가, 휴결강에 대한 보강, 학생 강의평가 안내, 성적공시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강사는 교육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강사가 임용기간 중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희망일 2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8조(신규채용) ① 강사를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마감일 5일전까지 지원자격,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 및 2단계 심사를 통합하거나 2단계심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1단계(기초 및 전공심사):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자격 충족여부, 지원자의 전공 및 경력 등과 지원분야의 적합성 심사 등
2. 2단계(면접 또는 실기심사): 지원자의 교육자격 자질 및 철학, 실기능력 등에 대한 심사 등
- ③ 제2항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사 신규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계약 등) ① 강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방학 중 임금포함),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재임용 조건에 관한 사항 포함),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

을 정하여 서면 계약하여 임용한다.

② 강사에게는 신규 임용일 이후 휴직·정직 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하고, 퇴직 이후에는 신규 임용 절차를 통해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재임용) ① 각 대학(원)장은 임용 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임용 만료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별지 1]의 재임용 심사 신청/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강사의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학과장으로 한 재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학과 또는 관련 분야 본교 전임교원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강사의 재임용은 [별지 2]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대학(원)교원 인사 위원회 및 교원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1. 재임용을 신청한 자

2. 임용 기간에 담당한 강좌 중 최소 1개 이상의 강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강의 평가는 강의 평가 제도 시행 세칙에 따름

3. 학기당 담당한 수업 일수를 준수한 경우

4. 강의 계획서 입력, 성적 입력, 강의 수행 관련 자료 제출,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⑤ 교무처장은 교원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 재임용 심사 결과를 각 대학(원)에 통보하고,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임용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한다.

⑥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⑦ 이의신청이 접수된 강사에 대하여는 본 규정 제10조 4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이의신청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신청한 강사에게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② 강사가 임용 기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교원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당연 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임용 기간 중 만 70세에 도달한 때(이 경우 만 7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 기간 만료일로 함)

3.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면직 사유)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 시킬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강사의 소속 학과 또는 학사 조직이 폐지되는 때

3. 임용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교원으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교원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의 경우는 제15조의 정계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직위 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

사기판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

히 어려운 자

(②) 그 외 사항은 「교원인사기본규정」 제20조(직위해제)를 준용하되, 「교원인사기본규정」 제20조 제7항의 「교원징계

위원회」는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로 본다.

제15조(징계)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및 본교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징계요청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처 감사팀의 조사를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또는 인권센터의 처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위원회 또는 부서의 조사를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④) 총장은 교원윤리의 차원에서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사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강사의 징계요청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급여) ① 강사의 급여는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강사의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③)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제17조(강의제한) ① 강사가 임용기간 담당한 과목의 강의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해당 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동일과목의 복수 강좌를 담당할 시 강의평가 점수는 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강사가 80점 미만의 과목에 대해 [별지 3]의 강의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강사 재임용 심사 신청/포기서 양식

강사 재임용 심사 신청/포기서

인적사항	소 속	
	신규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	
	평가 대상 기간 내 담당교과목 현황	

※ 해당란에 ✓표시 하시오.

- 20 년 월 일부 강사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 년 월 일부 강사 재임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일 시: 20 . . .

신청인 : (서명)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2] 강사 재임용 심사 평정표

강사 재임용 심사 평정표

피평가자 인적사항	소 속						
	신규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피평가자 임용정보	평가 대상기간						
	대상 기간 내 담당교과목 현황	2000-0학기	과목명 :	(강의시간 :)			
			과목명 :	(강의시간 :)			
		2000-0학기	과목명 :	(강의시간 :)			
			과목명 :	(강의시간 :)			
평가단계 ¹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1단계	강의평가 ²	담당 교과목 중 강의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강의가 한 개 이상 ³				P / F	
	수업일수준수	학기당 담당 수업일수 준수				P / F	
2단계	평가항목	평가내용 (100점 만점, 항목별 점수 차감)			감점	해당여부	감점합계(A점)
	강의계획서 입력	수강신청일 이전 담당 교과목 강의계획서 입력 완료여부 (최초 위촉 학기는 평가 제외)	모두 완료한 경우	0			
			담당 강의 중 미완료한 강의가 있는 경우	-20			
성적입력	성적 입력 기간내	모두 완료한 경우	0				

¹ 1단계 항목 모두 “P”인 경우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² 「강의평가제도시행세칙」 제4조의 평가대상 제외 강좌거나, 강의평가 응답률이 50% 미만인 강의는 ‘P’로 평가함

³ 담당 교과목 중 강의평가 80점 미만 교과목은 「강사에관한규정」 제17조에 따라 강의가 제한될 수 있음

	전산 입력 완료 여부	담당 강의 중 미완료한 강의가 있는 경우	-20		
자료제출 (계약만료 직전학기 제외)	담당 교과목 수행 관련 자료 제출여부 (출석부, 성적평가 근거자료)	모두 완료한 경우	0		
		담당 강의 중 미제출한 강의가 있는 경우	-20		
교육자로서의 자질	교육자로서의 의무 수행, 품위유지, 윤리성	정직 1회	-35		
		감봉 1회	-30		
		건책 1회	-25		
		경고 1회	-10		
		주의 1회	-5		
총계 (100점 만점, 감점합계점수 차감)			100점 - A점 = (점)		
평가사유	※ 위 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재임용에 탈락한 경우 해당사항의 구체적 설명 기재 및 증빙 첨부				
	평가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강사 강의개선계획서

강사 강의개선계획서

인적사항	소 속			
	신규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대상강좌	강좌명	강의평가 점수	점	
	강의시간			
구분	내용			
1. 신청사유				
2. 강의개선계획				

신청일 20 . . .
신청인 성명: _____ (인)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